

제 안 요 청 서

『도시계획도로(준용도로) 유지 및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I. 연구용역 개요	1
II. 주요 과업내용	3
III. 제안서 작성방법	5
IV. 연구용역기관 선정방법	6
V. 유의사항	9
VI.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평가방법	10
VII. 제안 관련 서식일람	12

2024. 0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I. 연구용역 개요

1. 용역명 : 도시계획도로(준용도로) 유지 및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2. 용역의 배경 및 목적

- (개념)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법 상 도로는 아니지만 유지관리 단계에서 도로법의 일부 규정(기준·절차)*이 준용되는 도로(도로법 제108조)
 - * 도로점용(허가, 취소, 점용료 징수 등), 비용부담(공사비용, 원상회복 등), 벌칙 등
- (취지) 도시계획도로 등도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연계성을 갖고 전체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동일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유기적·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
- (문제점) 도시계획도로는 도로법 상 도로와 기능 및 역할 등이 달라 도로법 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

< 주요 사례 >

- ① 도로의 굴착공사 시 안전관리 등을 위해 설치해야하는 도로인식표시는 보도에 돌출형으로 부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모빌리티 통행량이 많은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사고 발생 우려
 - ② 보도 폭이 좁은 도시계획도로에서 건물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도로측이 아닌 건물 뒤편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진출입로 설치 기준, 설치 금지 장소, 설치 규격 등 별도의 관리지침이 필요
 - ③ 도로법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수도관 등 공작물에 대한 점용허가 시 공사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도시계획도로 내에서는 소음 및 분진 발생 최소화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굴진방식으로 허가하도록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
- * 개착방식으로 굴착 시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준공 후 3년까지 점용허가를 제한하는 등 굴진방식 허가를 유도(도로법 시행령 제56조)

- 또한, 준용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타 법과의 관계에 의해 유사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등으로 혼란

* (예시) 진출입로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연결허가 관련 기준·절차(제52조) 등이 제외, 도로점용(제61조 등), 원상회복(제73조) 등은 준용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이행 강제금(제100조) 및 과태료(제117조) 부과 규정은 포함되지 않아 운영 상 어려움

** 산업입지법에 따른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경우 점용료(도로법 준용) 또는 사용료(산업입지법) 중 어떤 것을 부과해야하는지 해석에 혼란

도시계획도로 등 준용도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분석을 통해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

3. 예산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300일)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주요 과업내용(제안요청)

1. 과업의 범위

① 「도로법」 상 준용도로 관리법제 조사 및 분석

- 「도로법」 상 준용 규정의 규율체계 및 연혁 조사·분석
 -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도로법」 규정의 준용형태 분석
 - 준용도로 규정의 연혁 및 입법취지 등 조사·분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준용도로 관련 타법 체계 및 관리 규정 현황 등 조사·분석
- 「도로법」 준용 및 준용 제외 규정의 타당성 분석
 - 「도로법」 상 준용 규정의 취지 및 타당성 분석
 - 「도로법」 상 준용 제외 규정의 취지 및 타당성 분석
 - 관련 법제처 법령 해석사례 및 판례 조사·분석

② 「도로법」 상 준용도로 운영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도출

- 준용도로 관리 방법, 주체, 권한 등 운영 현황 조사
 - 준용도로 개설현황 분석·정리
 - 준용도로의 도로관리·운영 실태 조사
- 준용도로 운영 상 문제점 및 쟁점사항 도출
 - 준용도로 관련 민원 등 사례 조사
 - 전국 도로관리청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문제점 발굴
 - 준용도로의 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도로법」 과 별도의 관리기준 마련 필요성, 항목 등 검토

- 3 -

③ 「도로법」 상 준용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준용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도로법」 상 준용도로의 규율 체계 및 준용 규정 개선 방안 모색
 - 준용도로 운영 상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 준용도로에 대한 별도의 유지관리기준 등 제시
 - * 도로의 기능, 주변 여건 및 위치 특성 등을 감안해 점용·연결 허가 등 도로관리에 대한 기준·절차를 도로특성별로 규정 분리 등
- 「도로법」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 제시
 - * 도로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법 등 관련 법령의 상관관계 고려 필요
-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개선방안의 타당성 검토

- 4 -

III. 제안서 작성방법

1.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50매 이내로 아래한글로 작성하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함
-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

2. 가점요인

- 용역수행을 위한 접근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용역추진 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

3. 감점요인

- 직접 관계가 없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자료를 첨부한 경우
- 실효성이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내용 등

4. 추진일정

-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고, 준공 20일전에 제출

- 5 -

IV. 연구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전화 044-201-3917)
- 기타 관련서류는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함

- 6 -

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 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제안서의 평가 및 업체 선정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의 비중으로 하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종합순위를 정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용역수행업체 선정

□ 보안준수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 제안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단, 심의평가의 경우는 예외)

□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기관(업체)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가 됨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시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내용의 국토교통부에서 필요시 추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안설명을 요구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V. 유의사항

1. 가격입찰방식(전자입찰)

-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2.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3.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

VI.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평가방법

① 제안서 내용평가

□ 평가항목

평가요소	체크포인트	평가방법	점수
1	기관평가 ○ 기관예산규모(정부출연금 포함) ○ 관련 연구인력(석, 박사 등)보유수	계량평가	주1)
2	입찰참가 제한 등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0]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적용)	계량평가	주2)
3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비계량평가	주3) ⑤④③ ②①
4	추진체계 및 일정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⑤④③ ②①
5	산출물 평가 ○ 일정별 산출물과 전체내용의 적절성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 성과물 활용	"	⑤④③ ②①
6	투입인력 평가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수행경험, 학력 등	"	⑤④③ ②①
7	기타항목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제시	"	⑤④③ ②①
계			

주 1) 계량평가(10)

- 기관예산규모(5) : 30억원 초과(5), 15억 이상(4), 15억 미만(3)
- ※ 기관예산규모는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기준
- 연구인력 보유수(5): 20인 초과(5), 10인이상(4), 10인 미만(3)
- ※ 도로기술 등 관련 전공 석사·박사급 연구인력 보유수

주 2) 계량평가(1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0]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제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용 또는 분담비용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용 또는 분담비용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주 3) 비계량평가(80)

- 용역수행진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배분하여 합산평가
- 1. 매우우수:⑤ 2. 우수:④ 3. 보통:③ 4. 다소미흡:② 5. 미흡:①

VII. 제안 관련 서식일람

1. 과업제안서(표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3.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4. 연구진 이력사항
5. 보안서약서
6. 청렴계약서

□ 평가기준(배점기준)

평가요소		체크포인트	점수
1	기관평가	○ 기관예산규모(정부출연금 포함)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보유수	10
2	입찰참가제한 등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0]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 적용)	10
3	과업접근방법 및 기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20
4	과업추진체계 및 일정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15
5	산출물 평가	○ 일정별 산출물과 전체내용의 적절성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 성과물 활용	15
6	투입인력평가	○ 투입인력의 경력, 학력 등	15
7	기타항목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제시	15
계			100

□ 평가점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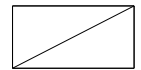
○ 점수 : 내용평가득점 × 80%

※ 내용평가 득점은 업체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② 제안서 가격 평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가격 평가 (배점한도 20%)

<양식 1>



과업제안서

용역명 : 도시계획도로(준용도로) 유지 및 관리체계 마련 연구

업체명 : (인)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되도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